

[별표8]

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/충전시설 설치 기준 (제7조의2제4항 관련)

구분	신축시설	기축시설 (‘22.1.28.전 건축허가)
의무비율	총 주차대수의 5% 이상	총 주차대수의 2% 이상

- * 충전시설 종류 : 완속충전시설
- * 설치 기한 : 2026. 1. 27.
- * 설치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
- * 설치 예외 : ①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· 시행령」 등 관련법령의 전용주차구역 미설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주거시설 철거(부대개편 또는 중기계획 승인)가 예정된 경우 또는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되는 명확한 사유로 각 군 등의 장이 승인한 경우
- ③ 부대 여건에 따라 설치의무 비율 준수가 불가하며, 미설치 및 미설치 사유를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경우